

CCPR/C/JPN/CO/7

배포: 일반

2022년 11월 3일

원문:영어

## 자유권규약위원회

### 일본 정부의 제7차 정기 보고서에 관한 총괄 소견\*

1. 위원회는 일본의 제7차 정기 보고서<sup>1</sup>를 2022.10.13. 및 14.에 개최된 제3925차 및 제3926차 회의<sup>2</sup>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22.10.28.에 개최된 제 3946차 회의에서 이 총괄소견을 채택했다.

#### A. 서론

2. 위원회는 보고 전의 질문 목록<sup>3</sup>에 대한 일본정부 제7차 정기 보고서 제출 및 거기에 나타난 정보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체약국 대표단과 다시 건설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얻은 것에 사의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표단이 제공한 구두 답변과 대화 후에 서면으로 제공된 보충 정보에 대해 체약국에게 감사한다.

####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체약국이 다음의 입법적, 정책적 및 제도적 조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a) 2020 제5차 남녀 공동 참획 기본 계획.

(b) 2019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한 우생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에 관한 법률.

---

\*제136회기(2022년 10월 10일~11월 4일)에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sup>1</sup> CCPR/C/JPN/7.

<sup>2</sup> See CCPR/C/SR3925 and CCPR/C/SR3926

<sup>3</sup> CCPR/C/JPN/QPR/7.

- (c) 2018 여성의 활약가속을 위한 중점 방침.
- (d) 2018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획 추진에 관한 법률.
- (e) 2018 민법 731조 개정에 의한 남녀 혼인 최저 연령 균등화.
- (f) 2017 법률 제72호 채택에 의한 성범죄에 관련된 형법 일부 개정.
- (g) "특정 종류의 범죄에 대한 취조의 비디오 녹화 의무화"를 포함한 취조 실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한 2016 형사 소송법 개정.
- (h) 2016 기술 실습생의 적정한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i) 2015 교정의관(矯正醫官)의 검업 및 근무시간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 규약이 실시되는 헌법상 및 법률상의 틀

4.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에 언급한 재판례에 관한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 및 규약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에 의한 해석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대하여 판사와 변호사에게 제공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해 유의한다. 하지만 경찰관, 치안부대, 시민사회관계자 및 일반시민 사이에 규약 및 국내법에서의 그 적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및 의식향상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제2조) 비준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체약국의 중복되는 공약을 인식하고 있다.

5. 위원회는 지난번의 권고<sup>4</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에 대하여 규약 및 국내법에서의 그 적용에 대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치안부대, 시민사회 관계자 및 일반시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체약국은 국내법규에 있어서 규약을 완전하게 실시하여 국내법이 규약상의 의무에 적합하도록 해석 및 적용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유효한 구제조치가 이용가능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개인 통보 요건을 규정하는 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sup>4</sup> CCPR/C/JPN/CO/6, para. 6 및 CCPR/C/JPN/CO/5, para. 7

## 국내 인권기구

6.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내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 대해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를 인식하지만, 제공된 정보의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과 인권 촉진 및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른 해당 기구 설립에 대한 명확한 진전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한다.(제2조)

7. 위원회는 지난번의 권고<sup>5</sup>를 반복하여 체약국에 우선사항으로서 인권 촉진과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국내인권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충분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 반 차별의 법적 틀

8. 헌법 제14조가 모든 개인을 위한 법 앞에 평등을 확립하는 일반적 비차별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하면서도,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에 따른 포괄적인 반 차별법이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반 차별법을 채택할 계획에 대한 정보가 체약국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했을 것을 유감으로 한다.(제2조, 제20조 및 제26조)

9. 체약국은 포괄적인 반 차별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그 법적 틀이 인종, 의견, 출생, 성적지향, 성 정체성 및 기타 지위를 포함한 규약상의 모든 금지사유로 인하여 사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접, 간접 및 복합 차별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체적 및 절차적 보호 및 차별 피해자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10. 위원회는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싸우고 평등한 취급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약국이 취한 조치에 유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특히 공영 주택, 호적상의 성별 변경, 법적 결혼, 교정 시설에서의 취급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및 제26조).

11. 위원회의 지난번의 권고<sup>6</sup>에 따라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싸우기 위해 계발할

---

<sup>5</sup> CCPR/C/JPN/CO/6, para. 7 및 CCPR/C/JPN/5, para. 9.

<sup>6</sup> CCPR/C/JPN/CO/6, para. 11.

등을 강화한다.

(b) 동성 커플이 체약국의 모든 영역에서 공영 주택에 대한 접근 및 동성혼을 포함한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c) 생식기 또는 생식 능력의 박탈 및 미혼 상태를 포함한 성별 변경의 법적 승인을 위한 부당한 요건의 철폐를 검토할 것.

(d) 교정 시설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공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표준 처우로서 독거방이 사용되지 않도록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처우 및 실시에 관한 지침 2015"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증오발언과 증오범죄

12. 2016년에 「본방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및 「부락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어, 또 교육계발 캠페인을 통해 증오발언을 해소하려는 대처 등 차별 및 증오발언과 싸우기 위해 체약국이 취한 조치를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한다. (a) 중국인, 부락민, 류큐인 기타 소수민족 및 선주민족, 특히 한국·조선인 및 한국·조선계 일본인을 표적으로 하는 소수민족 및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양쪽에서 계속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 그 중에는 조직이나 정치 단체, 미디어 플랫폼이 데모, 가두 행동 및 정치 연설을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 있어 일부는 선거 운동의 이름 아래서 실시된 적도 있는 것. (b) 체약국은 증오발언, 증오범죄, 차별 선동 행위를 명확하게 범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인종 차별적인 동기는 판사에 의해 결정되는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는 것 (c) 현재의 법률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주지 않고 있는 것. (제2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7조).

13. 위원회는 지난번의 권고<sup>7</sup>를 반복하여 체약국에 대해 다음을 요청한다.

(a)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범위를 확대해,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b) 규약 제19조 및 제20조 및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 제34호(2011)에 따라, 증오 범죄의 개별의 정의 및 금지를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사유를 포함한 규약의 모든 금지사유에 근거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증오 발언 행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여, 증오범죄 및 증오 발언의 보고를 장려하고,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

<sup>7</sup> CCPR/C/JPN/CO/6, para. 12.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확립을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의 특정과 등록을 보장하는 것.

(c) 특히 경찰관, 검찰관, 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일반 시민의 감수성과 다양성 존중을 촉진하는 의식 향상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적·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취약한 집단에 대한 불관용,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싸우는 것.

(d) 중요 범죄와 중요 발언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건이 체계적으로 수사되어,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남녀 공동 참획

14. 위원회는 민법 제731조 및 제733조 개정, 남녀의 혼인 최저연령 평등화, 이혼 후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 등 남녀평등 분야에서 취한 조치를 각각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2022년 2월 여성 이혼 후 재혼 대기 기간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의 개요가 제안되었다는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를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민법중의 규정이 계속해서 남녀간의 불평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특히 부부가 같은 성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제750조가 실제로는 종종 여성에게 남편의 성을 채용하는 것을 강제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2018년 5월에 공포·시행된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 공동 참획 추진에 관한 법률」 채택과, 2015년 12월에 승인된 「제4차 남녀 공동 참획 기본 계획」에 유의하면서도, 행정·사법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기관에 여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우려해, 부락·아이누·재일코리안 여성 등 마이너리티 여성의 참가에 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한다(제2조, 제3조, 제23조 및 제26조).

15. 지난번의 권고<sup>8</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사회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실효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사법의 모든 수준 및 민간 부문에 있어서 소수민족·선주민족의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제5차 남녀 공동 참획 기본계획」의 실시나, 실무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불평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법의 올바른 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아드보카시 캠페인 등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싸움을 시야에 둔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것.

(c)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여성의 권리 침해

---

<sup>8</sup> CCPR/C/JPN/CO/6,para8및9.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민법 제733조와 제750조 개정을 포함하여 고정관념과 싸우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 테러 대책

16. 위원회는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공모죄법)이 277가지 행위를 범죄로 삼며, 언뜻 보면 테러나 조직범죄와는 무관한 범죄도 포함한 넓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법률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4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려한다.

17. 체약국은 테러리즘이나 조직범죄와 무관한 행위의 범죄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모죄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죄법의 적용이 규약상의 어떠한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조치 및 예방조치를 채용하여야 한다.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18. 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 없는 강제성교죄 적용, 다른 형태의 성교의 편입, 피해자의 형사고소 없이 성범죄 소추가 가능하게 된 2017년 6월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을 환영한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정비되고 있는 것,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간 강간도 법률로 처벌받는다라는 정보를 받은 것에 유의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여성,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이면 피해자에 대한 학대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찰기관의 인식과 적절하게 전대를 배려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과 실종사건 수사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매우 적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원조와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보고에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의 결여와 체약국이 성적 동의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진전시키지 않음을 유감으로 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26조).

19. 지난번의 권고<sup>9</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싸우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경찰관,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입국관리국, 기타 국가의 관련 부국 및 일반 시민에 대한 가정

---

<sup>9</sup> CCPR/C/JPN/CO/6, para. 10.

폭력과 싸우기 위한 연수, 교육 및 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것.

(b) 피해자에 의한 호소를 촉진하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 (실종을 포함)가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되고, 조사 중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는 것을 확보하는 것.

(c) 재류자격에 상관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원조, 지원서비스 및 보호의 제공을 확보하는 것.

(d)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한정하기 위해 인종 또는 민족별로 구분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e) 성행위 동의 연령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인상하는 것.

####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기타 잔학,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 금지

20. 위원회는 체약국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형범죄 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도 없는 것을 유감으로 한다. 위원회는 19개의 사형범죄 중 일부가 사형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제한하는 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형수가 가장 40년의 케이스를 포함하여 집행까지 장기간 독방에 계속 수용되고 24시간 강요되는 비디오 감시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계속 우려한다. 또한 사형수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전 및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형집행일 사전 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방법은 '부득이하다'는 대표단의 성명을 우려하면서 유의 한다. 또한 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신중한 수정에 대해 제공된 정보에 유의하면서도 재심청구 계류 중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깊이 우려한다. 또한 사형수의 정신적 건강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사형 사건에 있어서의 강제적인 심사 시스템의 결여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

21. 위원회의 일반 의견 제36호(2018년)를 염두에 두면서 이전의 권고<sup>10</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사형 폐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형 폐지를 향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적절한 계발 조치를 통해 폐지가 파란직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체약국은 경과조치 확립을 검토하고, 우선사항으로서 사형범죄 수를 줄이고, 규약에 따라 사형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

<sup>10</sup> CCPR/C/JPN/CO/5, para. 16-17 及 <sup>11</sup> CCPR/C/JPN/CO/6, para. 13.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사형수 및 그 가족에게 사형 집행에 대비하는 기회의 부족에 의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사형 집행 예정일시를 합리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장기적인 독방 감금을 실시하지 않고 사형수에 대한 24시간 비디오 감시를 엄밀히 필요한 시간 및 기간에만 한정하는 등, 사형수의 제도가 잔학,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무시한 취급 또는 형벌이 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

(c) 사형사건에서 재심청구 또는 은사에 집행정지효과를 부여하여, 사형수의 정신위생 상태를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심사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사형수와 그 변호사의 모든 면회에 엄격한 비밀 교통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재심제도를 확립하는 것.

(d)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하는 것.

22. 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국내 피난민에 대하여 '자주', '강제'피난의 구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체약국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체약국이 후쿠시마에서 설정한 피폭 수준의 역치가 높고 일부 피난구역에 대한 해제 결정에 의해 사람들을 고오염 지역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피난구역 밖에 사는 피난민에 대한 무료 주택지원이 정지된 것,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 피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진 재해 후 후쿠시마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다수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제6조, 제12조 및 제19조).

23. 지난번에 권고<sup>11</sup>를 반복하며,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후쿠시마에서 원자력재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사선 수준이 주민을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오염된 지역의 피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

(b) 방사선 수준의 감시를 계속해,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시의를 얻어 공표하는 것.

(c) 「자주」 「강제」피난자의 구별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는지 여부에 관없이, 모든 국내 피난민이, 피난 구역외에 사는 피난민을 위한 무료 주택의 재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 주택, 의료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d) 소아암 다발과의 상관 가능성을 포함하여 피폭자의 건강에 대한 원자력재해의 영향을 계속 평가하는 것.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피폭자에게 무료이며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진단 제공을 검토할 것.

---

<sup>11</sup> CCPR/C/JPN/CO/6, para24

## 인신의 자유, 안전과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처우

24. 위원회는 비자발적 입원을 결정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퇴원을 포함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정신의학 심사위원회에 의한 모든 입원중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신과 시설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체약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 기관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및 제10조).

25. 위원회의 지난번의 권고<sup>12</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 또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 (b) 강제입원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자상타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에만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 (c) 모든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전동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것.
- (d) 「장애인 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의료 기관에 확대할 것을 검토하는 등, 공사 정신 의료 기관에 있어서의 장애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감시, 방지,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
- (e) 모든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에서 학대의 효과적인 조사 및 제재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

26. 구금제도에 관하여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하면서도, 위원회는 자유 박탈 당초부터 보석의 자격 또는 국선 변호인 선임의 권리가 없는 것, 및 체약국이 기소 전 보석 제도의 실시는 불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국내법에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여 공판전 구류되어 있으며, 구류 연장이나 재연장 청구가 높은 비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보고나, 취조 실시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없는 것, 취조의 비디오 녹화 의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계속 우려한다. 게다가 위원회는 구금상태, 특히 장기간의 독거방 사용과 피구금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결여, 변호사에 대한 접근 및 가족과의 연락과 같은 절차적 보장의 부정, 투표권의 부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한다.(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25조)

---

<sup>12</sup> CCPR/C/JPN/CO/6, para. 17.

27. 지난번의 권고<sup>13</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자유 박탈 당초부터 규약 제9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실제로 누리고, 구금이 변호사에 대한 접근, 가족과의 연락권 및 필요시의 의료 제공에 관해서도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Nelson Mandela Rules)에 완전히 적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다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 정식 체포 전을 포함한 모든 취조는 비디오 녹화되어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취조의 녹음·녹화의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

(b) 공판 전 구류기간의 규정은 과도한 구류기간을 방지하기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

(c) 기소 전 구류시의 보석과 같은 비구속적인 대체 수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d)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미결 구류자를 독거방에 구속하는 총기간의 제한을 검토함과 동시에 독거방을 더욱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 대체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

(e) 취조시의 고문 및 학대의 신고를 신속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 위원회로부터 독립한 불만 심사 기구를 마련하는 것.

(f) 공무 참획 및 투표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의견 제25호(1996년)에 비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법률을 재검토하는 것.

#### 노예제, 예속, 인신거래 철폐

28. 위원회는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체약국이 위원회의 이전의 권고에 대해 진전이 없고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에 대처하는 규약상의 의무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수사와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과거 인권침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와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유감이다(제2조, 제7조 및 제8조).

29. 위원회는 지난번의 권고<sup>14</sup>를 반복하며 체약국에 대해 다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실효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a) 전쟁중에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모든 신청을 실효적, 독립적이고

---

<sup>13</sup> CCPR/C/JPN/CO/6, para. 18.

<sup>14</sup> CCPR/C/JPN/CO/6, para. 14.

공평하게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가해자를 소추하고 유죄라면 처벌할 것.

(b) 외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법 접근과 완전한 배상.

(c) 교과서에서의 적절한 언급을 포함한 이 문제에 관한 교육, 피해자에 대한 증상이나 사실 부정의 모든 기도에 대한 강한 비난.

30. 위원회는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하고 인신거래와 싸우는 노력을 환영하지만, 대부분의 유죄판결이 집행유예 판결 또는 경미한 벌금의 부과로 끝나고 있으며, 범한 행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기능실습생 제도에 관하여 위원회는 노동자의 인신거래 및 기타 노동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입입검사 수의 증가에 대한 정보를 환영하지만, 기능실습제도 하에서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에 대해서 계속 우려한다(제2조, 제7조 및 제8조).

31. 지난번의 권고<sup>15</sup>를 상기하면서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a) 기능실습제도 내를 포함하여,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에 관한 피해자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노동기준감독관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관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

(b) 독립된 불만처리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실습제도 내 또는 노동자 인신거래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를 소추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한 행위의 중대성에 맞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

#### 난민 · 비호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처우

32. 위원회는 난민 및 비호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체약국의 답변에 유의하고, 수용시설에서의 처우 개선 계획의 책정에 관한 정보, 강제송환 예정일을 퇴거 명령의 교부로부터 적어도 2개월 후로 하는 강제송환 절차 개정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체약국이 수용의 대체조치 및 보완적 보호를 위한 자격인정제도 도입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며 유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체약국이 장기 수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환영한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3명의 피수용자가 사망하는 등,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에서의 열악한 건강상태에 의한 고통에 대한 우려할 만한 보고나, 재류자격이나 비자를 잃고, 노동이나 수입을 얻는 선택지가 없는 '가방면(provisional release)'된 '가방면자(karihomensha)'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 인정률이 낮다

---

<sup>15</sup> CCPR/C/JPN/CO/6, para. 15 및 16

는 보고에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33. 지난번의 권고<sup>16</sup>를 고려하며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국제기준에 따른 포괄적인 망명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

(b) 이민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 지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수용 시설에서의 처우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c) "가방면"중의 이민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회의 확립을 검토하는 것.

(d) 논르푸르만 원칙(추방 및 송환 금지)이 실제로 존중되고 국제적 비호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정에 대한 정지 효과를 가지는 독립한 사법상의 항소 메커니즘에 대한 액세스가 주어지는 것을 확보하는 것.

(e) 행정 수용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입관의 수용 기간의 상한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수용이 최단의 적절한 기간, 행정 수용에 대한 기존의 대체 수단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경우에 만 행해져 이민이 수용의 합법성에 대해 결정하는 법원의 절차에 실효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f) 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에 근거한 비호 신청자의 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경비 직원 및 입국 관리 직원에게 적절한 훈련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

#### 프라이버시 권리

34. 위원회는 경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에 대해 보상하는 노력에 관하여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를 환영하며 디지털개혁 관련 6법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 유의한다. 하지만 감시 권한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감시, 방수 활동,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등의 형태로 행해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의적 간섭에 대해 독립된 사법감독의 결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충분한 보호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17조)

35. 체약국은 데이터의 보전, 접근, 감시, 방수 활동을 관리하는 규칙을 규약, 특히 제17조에 적합 시키고, 합법성,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법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감시기구의 대상으로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감시 및 방수 활동에 대해 통지하고

---

<sup>16</sup> CCPR/C/JPN/CO/6, para. 19.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모든 남용의 보고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사가 인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로 이어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36. 위원회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복지'의 모호하고 무한정한 개념 및 특정비밀 보호법에서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과 분류의 일반적 전제 조건의 광범위한 정의에 대한 지난번의 우려를 재확인한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방송 면허가 정지된 적이 없다는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하는 한편, 특정 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무거운 형사벌과 방송법 및 전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방송국 영업정지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저널리스트 및 인권옹호자의 활동에 대한 억제효과가 생겨서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제18조 및 제19조).

37. 위원회는 지난번의 권고<sup>17</sup>를 상기하며 체약국에 대해 다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a) "공공복지"를 이유로 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약에서 허용된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복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b) 특정 비밀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의 범주가 좁게 정의되는 것, 정보를 수집, 수령, 발신할 권리에 대한 제약이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하고 특정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을 갖추는 것, 누구나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공익정보의 확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특정 비밀보호법과 그 적용이 규약 19조의 엄격한 요건에 적합함을 확보할 것.

(c) 언론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언론과 언론 관계자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d) 방송·면허 당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e) 독립적인 기자와 미디어 관계자를 모든 형태의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확보하고, 과격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규정 및 기타 규정을 공공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할 것.

---

<sup>17</sup> CCPR/C/JPN/CO/6, para23.

38. 위원회는 체약국에서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보고에 우려를 가지며 유의한다. 학교 식전에서 국기를 향해 일어나 국가를 노래하는 것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소극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은 행위의 결과, 일부가 최장 6개월의 직무 정지라는 처분을 받은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위원회는 식전 중에 학생들에게 기립을 강제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청에 대해 우려한다(제18조).

**39. 체약국은 사상·양심의 자유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규약 제18조의 협의의 해석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체약국은 입법과 실행을 규약 제18조에 적합시켜야 한다.**

### 평화적 집회의 권리

40.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하지만, 위원회는 특히 국회에 대한 항의 및 오키나와에서의 항의에서 항의자에 대한 과도한 실력행사와 녹음, 및 시위자와 저널리스트 체포를 포함한 경찰에 의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하고 불균형한 제한을 우려하는 관계자로부터의 정보에 계속 우려한다(제19조 및 제21조).

**41. 규약 제21조에 따라, 또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의견 제37호(2020년)에 비추어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평화적 집회에서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실력행사 및 자의적 체포·구속에 관한 모든 신청이 신속, 철저적, 공정하게 조사되고 책임자가 소추되어 유죄가 된 경우에는 처벌되고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b) 경찰관에게, 「법 집행관에 의한 힘 및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및 「법 집행에 있어서의 비치사성 무기에 관한 유엔 인권 가이드선스」에 근거해, 무력 사용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c) 평화적 시위 참가자, 인권 옹호자, 평화적 시위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를 민간 주체에 의한 협박, 위협, 괴롭힘, 공격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것.

### 소수 민족의 권리

42. 2019년 아이누 정책 추진법에 유의하면서, 위원회는 선주민족으로서의 아이누의 권리에 대한 차별과 부정, 류큐 선주민족 공동체와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의 결여, 오키나와의 공동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자유, 사전 및 충분한 정보를 부여받은 후에 참가할 권리, 전통적인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자신의 언어로 아이를 교육할 권리에 대한 부정에 관한 보고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한국인·조선인과 그 자손이며, 국가적 또는 민족적 소수자로 인식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나 정치적 권리 행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차별적 정책운용에 관한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26조 및 제27조).

43. 체약국은 아이누, 류큐 기타 오키나와 공동체의 전통적 토지 및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에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를 부여받은 후 참여하는 권리 존중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모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조선인과 그 자손이 특히 지원 프로그램이나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재일한국인·조선인과 그 자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의 권리

44. 위원회는 특정 공식서식에서 혼외자를 '비적출자'로 정의하는 용어 사용에 관한 체약국의 설명에 유의하고, 체약국이 그러한 용어의 삭제를 검토하며, 모든 아동의 평등한 권리를 확보할 의사가 있다는 대표단의 확약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수정에 관하여 체약국이 제공한 정보에 유의하면서, 법원의 명령과 부모의 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고 종종 장기간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하고 판사가 일시보호 영장 발행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모가 직접 스스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체약국이 제공한 답변을 인식하는 한편,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 '부모에 의한 자녀의 탈취'의 빈번한 사례의 보고와 체약국의 적절한 답변 결여에 대해 우려한다.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

45. 체약국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자국의 법률 및 실행이 규약 제24조에 완전하게 준거하는 것을 확보하고, 모든 어린이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치욕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호 조치를 채용하는 것.

(b) 법률을 개정하고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격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사례에 대해 강제적인 사법심사를 도입하며, 자녀와 부모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자녀의 보호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확보하는 것.

(c) 「부모에 의한 아이의 탈취」의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도입해, 국내 사례이든 국제 사례이든, 아이의 감호에 관한 결정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실제로 완전하게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는 것.

#### D. 보급과 후속조치

46. 체약국은 사법, 입법 및 행정당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조직 및 일반시민 사이에서 규약으로 규정된 권리의 인식을 높이는 관점에서 규약, 제7차정기보고 및 이 총괄소건을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 체약국은 정기보고서와 이 총괄소건이 체약국의 공용어로 번역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체약국은 2025년 11월 4일까지 상기 제7항(국내인권 기관), 제33항(난민 및 비호희망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대우) 및 제45항(어린이의 권리)에 있어서의 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48. 위원회의 심사주기 예정에 따라 체약국은 보고서 제출에 앞서 2028년에 위원회의 문제 목록을 받고 1년 이내에 제8차 정기 보고서를 내용으로 하는 회답을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 체약국에 대해 동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조직과 널리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총회결의 68/268에 따라 보고서의 글자 수 제한은 21,200 단어이다. 체약국과의 다음 건설적 대화는 2030년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HOME](#)